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77

발의연월일: 2024. 7. 24.

발 의 자:황 희·안규백·한민수

강선우 • 이용선 • 어기구

박 정・차지호・부승찬

정성호·조 국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학교의 증축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두도록 하고, 개발사업 시행자 등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대규모 도심 개발 추세가 맞물리면서, 비도심·구도심 지역의 학생 규모는 급격히 감소하고, 특정 지역의 과밀학급·과대학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존의 학교 공간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캠퍼스형 학교 구상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행법의 체계상 학교시설 용도로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으로의 학교 설립·이전은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통하여 학교시설 용도의 건물 매입

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5조의4제4항제2호 및 제6조제2항 등).

법률 제 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증축"을 "증축이나 학교시설의 매입"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증축"을 "증축하거나 학교시설을 매입"으로 한다.
제5조의4제4항제2호 중 "증축"을 "증축 또는 학교시설의 매입"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증축"을 "증축하거나 학교시설을 매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학교 증축 경비"를 "해당 경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유치원	제1조(목적)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	
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	
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	
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u>증축</u> 을 쉽게 함을	<u></u> 증축이나 학교시설의
목적으로 한다.	매입
	<u>.</u>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	3
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	
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	
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	
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	
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	
운 곳에 있는 학교를 <u>증축</u> 하	<u>증축하거</u>
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	나 학교시설을 매입

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 계의 설치) ① ~ ③ (생 략)

-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 2.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u>증</u>축 경비
- 3. ~ 5. (생략)
- ⑤ ⑥ (생 략)

제6조(시·도 부담 경비의 재원) ① (생 략)

② 시·도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u>중축</u>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할수 있다. 이 경우 <u>학</u>교 중축 경비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

·
1. (현행과 같음) 2증
축 또는 학교시설의 매입 -
3. ~ 5.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6조(시·도 부담 경비의 재원) ① (현행과 같음)
2
증축하거나 학교
시설을 매입
<u>해당 경비</u>

하여야 한다.	
---------	--